

질의. 서 면 답 변 서

질 의	우강호.신교선	위원	답 변	평창군수(축산과장)
회 의	제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p>< 질문요지 ></p> <p>○ 축산물등급판정시설 현황 및 미활용 이유(우강호 의원)</p> <p style="padding-left: 40px;">< 도축세감소 관련 ></p> <p>○ 평창축협의 횡성도축장 활용 이유(신교선 의원)</p>				

< 답 변 >

□ '98 임시회중 우강호 의원님.신교선 의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축산과 소관 축산물 등급판정시설 현황 및 미활용 이유 에 대하여 붙임내역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 축산물 등급판정시설 현황 및 미활용 이유

축산물 등급판정시설 현황 및 미활용 이유

□ 도축장 및 축산물등급판정시설 현황

- 도축장(평창기업)

	총 부 지	: 7,740m'
	계 류 장	: 256.5m'
	작 업 실	: 312m'
	기 타	: 491m'

- 축산물등급판정시설 (평창군)

	골발 정형실	: 54m'
	냉동 냉장실	: 103m'

□ 미 활용 사유

- 육류도체 등급제는 '98. 1. 1일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계획이었으나,정권교체, 경제위기와 등급판정사의 부족으로 순차적 시행 계획임
 전국 : 서울.6대광역시.도 및 76개시.군이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 13개 도축장중 4개소 (춘천.원주.횡성.철원)만 시행중임.
 - '98년말까지 전국 41개 시.군 확대예정
- 평창축협 현 도축물량(월 평균 31두)만으로는 등급판정사 주재근무 불가
 - 관외반출육은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가능하므로 평창축협의 지정도축장은 횡성산업임.
- 도축전 계류 및 도축후 예냉(16 ~ 24시간)기피로 기존 식육판매업소의 육류도체 등급제 시행 전면 반대

□ 대 책

- '98. 5. 15일자로 강원도에 등급사 확보시 최우선 배치되도록 의견서 기 제출
- 등급제 고시지역으로 지정시 관외 및 관내 판매물량도 등급판정을 받아야 됨으로 등급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며 현안사항 해결코저 협의중 [관외반출용 평창축협 도축물량만 출장 등급판정]
- 당일등급판정 실시(전국확대시 까지 한시적 운용)
 -횡성도축장의 등급사를 주2회 내군하여 판정토록 협의

평 창 군

우-232-8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0374)30-2393 / 전송 34-2393
 처리부서 : 축산과 가축위생계(본청 4층) 계장 : 신 상 군. 담당:이용언

문서번호 축산 51514 - 436

시행일자 1998. 5. 15. (3년)

장유

발급 강원도지사

간조 축산정책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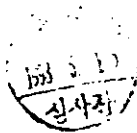
취급		군 수
보존	5년	[Handwritten Signature]
부군수		
과 장	전 결	
기안	이용언 [Seal]	가축위생계 [Seal]
		협조

제목 축산물 등급화 거래지역 조정에 따른 의견 제출

1. 축산51514-509('98. 5. 12)호와 관련 입니다.

2. 관련호에 의거 소도체등급화 거래지역 조정에 따른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 의견서 1 부 끝.



등급화 거래지역 조정에 따른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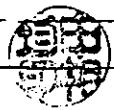
1. 평창 대관령한우 품질인증 획득과 평창축협 한우전문 판매점(서울 마천동) 육류공급을 위한 지정도축장(횡성산업)을 평창기업 도축장으로 전환이 필요함
2. 현행 평창축협의 관외반출 도축물량 월평균 30두에 불과 등급사 주재 배치가 어려운 실정인 반면,
식육판매업소(51개소)는 온도체 선호에 따라 반대 입장이나
3. 추후 도축물량 증대가 예상되는바,
등급사 확보시 최우선 추가지정을 요망 합니다.

강 원 도

200-700 강원 춘천 봉의동 15번지/ 51-3319/전송 (0361) 250-2454/담당:김옥성

문서번호 축산 51514-509
 시행일자 1998. 5.12 (3년)

수 신 받는곳 참조
 참 조 농정, 산경, 축산과장

선결	과장	김옥성	지	
접	일자		시	
	시간	98.5.12	결	
수	번호	710	재	
	처리과	축산과	공	레장
담당자		김옥성	람	

제 목 ‘축산물 등급화 거래지역 조정에 따른 의견제출

1. 관련 : 농림부고시 제 1997-50호 ('97. 7. 5)

2. 관련호에 의거 현행 축산물 등급화 거래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화거래지역, 축산물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를 조정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이를 예고한바

3. 우리도는 춘천시가 '99. 1. 1일부터 돼지도체의 등급판정 추가고시외에는 소도체 등급시행지역 추가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바, 한우 고급육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는 동 제도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도체등급화 거래지역 추가지정을 받고자 하니 회망시군에서는 이에대한 의견을 '98. 5. 14일한 긴급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 원 도 지

축산경제국장 전결



받는곳 : 더 (1 - 18)

육류등급화거래지역고시협의회 결과보고

			군 수
계 장	과 장	부 군 수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육류등급화 거래지역고시를 위한 협의회 개최결과】

1. 일 시 : '97. 7. 3(목) 10:30 ~ 12:00

2. 장 소 : 소회의실

3. 참 석 자 : 검사기관(가축위생시험소중부지소장, 검사계장),
평창축협전무, 도축장경영자대표, 축산기업조합대표,
축산과장, 가축위생계장

4. 협의회 개최결과

가. 협의회 개최배경

- 평창도축장 준공 : 간이도축장 ⇒ 도축장 (관외반출허용)
- '98년도부터 냉장육 상태의 등급판정제 전도축장 시행계획
(현재 강원도 13개 도축장 4개소 시행중(춘천, 원주, 횡성, 철원))
- 평창축협의 대관령한우(품질인증)의 산지도축을 위한 고시지역신청
- 육류등급화지역 지정고시절차
사업자신청→강원도→농림부→등급판정소→현지실시→농림부결정고시

나. 평창군 기본방향

- 거래지역 지정고시후 육류도체 등급제 기본골격 유지하며
- 드라이아이스 이용 당일 등급판정방법 병행 실시 희망자에게 선택적으로 등급판정

※ 드라이아이스이용 등급판정방법

- 도살후 도체가 상온에서 사후강직이 시작되는 3~5시간정도 경과 냉장실입고 1시간 냉장후 등심판정부위 절개 배최장근단면에 드라이아이스이용 5분정도 동결
- 드라이아이스 제거후 냉장실에서 15~30분 경과 배최장근 단면 해동되면서 5℃ 정도에서 근내 지방도측정 등급판정

다. 문제점 (등급화지역고시)

- 관외반출분은 물론 일반시판분도 등급판정실시
- 기존 식육판매업소(42개소)의 온도체, 선호, 예냉기피
- 등급판정 작업과정(2분도체) 운반 등 복잡하고 장시간 예냉(18~24시간)
- 드라이아이스 이용시 판정부위 육류변색 및 폐기량속출(5~6근)
- 드라이아이스 구입 및 보관취급시 안전사고 우려
- 당일 등급판정시 우수축 포상금 지급제외
- 등급사의 고정배치 불투명(도축물량비례)과 출장판정시 축협 관외반출분 야간 발골작업 초래
- 냉장·냉동실 풀가동으로 전기료 부담가중
- 도축작업절차상 작업부증원과 전기료 등으로 사용료 인상불가피
현재 소(두당) 140,000원, 돼지 28,000원

라. 관련기관·단체 의견

1) 평창축협

- 평창도축장 이용희망(운반 및 제경비 절약효과)

단, 등급사의 출장판정시는 야간 발골작업이 불가피하므로 현제도 유지

※ 월평균 도축 25두(거세13, 비거세12)

2) 도축경영자

- 2분도체, 운반, 예냉검사 절차상 작업부증원과 냉장·냉동 풀가동에 따른 전기료 감안 사용료 인상 불가피(이용자 부담가중)
- '98년도 전 도축장 확대 실시까지 현제도 유지 희망
- 등급판정시설은 완료된 상태이므로 행정관서의 결정에 따르겠음.

3) 등급판정소

- 현재 도축물량으로는 등급사 고정배치 불가
단, 횡성출장소(4인배치)는 출장판정 가능(춘천1, 원주1, 횡성2)

4) 식육판매업소

- 작업절차상 시간낭비와 검사부위변질 등 판매의 애로로 이중피해
- 각 업소공히 영세하고 소비자의 온도체선택으로 현제도 유지
(관외반출분만 등급판정토록 절충요망)

5) 검사기관(가축위생시험소)

- 등급화지역으로 고시되면 선택적으로 등급판정을 할 수 없고 현재의 도축물량으로는 등급사 고정배치가 어려운 실정
- '97년말까지 간이도축장(태백, 영월, 홍천, 양구)의 폐쇄단계로 인근 시·군 도축물량 확보하고
- 등급사 고정배치와 '98년도 전도축장 시행때까지 다수민원을 위해 현제도 유지가 바람직하겠음.

6) 결 론

- 의견종합 농림부 및 등급판정소와 절충 법규정에 의한 기본골격 유지하며 민원 최소화토록 협의하겠음.

질의 · 서면답변서

질의	신 교 선 위원	답변	평창군수(도시과장)
회의	제58회 평창군 의회(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질의요지> ○송정택지 매각현황			

<답 변>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1697 - 2번지 일원
- 조성면적 : 98,773m²(29,878평)
- 사 업 비 : 5,422백만원
- 공사기간 : '91 ~ '94. 6. 31

□ 분양현황

- 계 : 242필지(74,216m²) ——— 8,750백만원(100%)
- 분 양 : 168필지(57,430m²) ——— 6,413백만원(77%)
- 미분양 : 68필지(15,544m²) ——— 2,337백만원(21%)
- 주차장 : 6필지(1,242m²) ——— 무상 (2%)